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### 제 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(등록) 촉탁

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(등록)를 촉탁합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).

재산의 표시		
등기(등록)원인과 일자		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
등기(등록)의 목적		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(등록)
채권최고액		
등기(등록)권리자		국(처분청 : 세무서장)
채무자	성 명	
	등 록 번 호	
	주 소	
등기(등록)의무자	성 명	
	등 록 번 호	
	주 소	
등 록 면 허 세		비과세(「지방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름)

- 붙임 1.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.  
2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접 수	년 월 일	접 수	조 사
	제 호	기 입	

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## 공지사항

1.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, 선적항,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.
2.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, 재산의 표시란에 "별지 목록과 같음"이라고 적습니다.